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나385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나3850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가소42433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성철

변론 종결 2020. 11. 19

판결선 고 2021. 1. 21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가소424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5409호로 약정금 청 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61559호 사건에서 2010. 10.12.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 처 D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1. 3. 24. 3,000,000원을, 2011. 4.13. 2,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고,피고에게 송금된 위 각돈은 위 각 송금일 당일에 E 계좌를 거쳐서 F에게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수서경찰서에 G 를 상대로 특정 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그 사건에서 G는 2011. 4.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경 피고가 위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 을 통하여 금원을 공여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위반죄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0.

2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

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5호증,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G가 받아 횡령한 정황을 알게 되어 G를 2011.경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자신 또는 피고의 지인들이 위 형사고소사건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1. 3.24. 3,000,000원을, 2011. 4. 13.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 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 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송금 액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오천석판사 박상준판사 차윤제